

중국 어선 검사 제도 소개

Introduction of Chinese Fishing Vessels Inspection System

연효흠^{†*}, 두현욱^{**}, 장일수^{***}

Hyo-Hum Yeon^{†*}, Hyun-Wook Doo^{**} and Il-Su Jang^{***}

ABSTRACT

As the China is the biggest fishery country in the world, Chinese fishing vessels survey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beginning of 1950. This study explained Chinese fishing vessels survey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regulations.

※ **Keywords** : 中華人民共和國漁業船舶檢驗條例, 중국어선검사, 어업선박검험규칙, Chinese Fishing Vessels Survey

1. 개 요

1.1 일반 선박 검사제도

중국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물리적 요건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원의 자질 향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78년 STCW 협약을 비준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79년 6월 12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선선원고시발증변법”을 공포

하여 선원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여 왔으며, 1983년 9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해상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시설,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며 국가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중국 연해수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연해수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연해의 항구, 내수와 영해 및 국가에서 관할하는 모든 해역을 말한다.

이어 1986년 12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고

* 선박검사기술협회 미래기획단

† 논문 주저자

** 선박검사기술협회 정책연구팀

*** 선박검사기술협회 마산지부

통안전관리조례(內河交通安全管理條例)를 제정하여 중국내하의 가항 수역에서 항행, 정박, 조업하는 선박이나 뗏목, 또한 이것들의 시설 및 인원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내하항수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강, 하천, 호수, 저수지, 운하 등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역 및 그 항구를 말한다.

1993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과 해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안전검사규칙”을 제정하여 중국국적의 총톤수 200톤 혹은 750kW이상의 해선(海船), 총톤수 50톤 혹은 36.8kW이상의 내하선박 그리고 중국 항구(해상 묘박지를 포함)를 입·출항하는 모든 외국적의 선박 등을 대상으로 중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중국의 법률, 법규, 규칙과 중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중국의 법률, 법규와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 및 “아세아 태평양지역항만국감독 양해각서”를 기준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교통관리계통 안전감독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2 중국 어선 검사제도

중국은 어업 대국이며 어선 최대 보유 국가이다.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된 어선검사 제도는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특히 국무원에서는 어업 종합 개혁의 일환으로 어업법 제26조에 의거한 “중화인민공화국어업선박검험조례”를 2003년 8월 제정하여 체계적인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조례에 의거 중국 농업부 소속 어업선박검험국에서 어선

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 및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중국의 어선검사제도에 대한 고찰은 중국어선 검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어업선박검험조례”의 각 조문별 내용을 중심으로 하부의 각종 시설기준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 중국어선 현황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선을 보유한 국가이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동력선으로 등록된 어선은 총 478,406척, 비동력선 453,433척으로 총 93만여척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 선박중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선이 약 28만척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내수면에서 종사하는 어선이다. 현재 어선 감척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선 척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포함하여 약 100만척에 가까운 어선이 조업중에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1,313만명으로 중국어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어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어업에 종사하는 만큼, 중국 정부는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어선의 안전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단계로 어선의 체계적 검사 및 선박용 관련 기자재의 검증을 위한 법을 2003년에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1.4 중국 어선 해난사고 현황

어선의 해난사고와 관련 중국 농업부에서 발간

한 자료에 의하면(아래 표 참조) 1990년 이후 어선 사고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년대	침몰	사망	실종
1990년	1,440척	818명	118명
1995년	2,519척	852명	245명
2000년	801척	678명	238명
2002년	536척	418명	198명

2. 중국어선검사관련 법률 체계

2.1 개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의 기초아래 2003년 8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어선검험조례”를 두어 어선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하고 있다. 또한 상기 조례를 기반으로 지방성 법규 및 기술규칙으로 어선 검사를 집행하고 있다. 법률 구조를 보면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 규칙→기술법규, 관리법규’로 되어 있다.

2.2 어선검사규정 구조

어선검사규칙은 어업선박검험국에서 제정하고, 농업부에서 채택 후 공포·발효된다. 새로운 선박 및 장비 등은 어업선박검험국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

2.3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어업 자원의 보호, 증식, 개발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1986년 7월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서 “어업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0년 한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어업법에 이르렀다.

동법은 총칙, 양식업, 채취업, 어업자원의 증식과 보호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선박 검사관련 부분은 제26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어업선박검험조례」를 만들어 선박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법의 제26조는 ‘제조, 갱신개조, 구매, 수입된 것은 반드시 어업선박검험부문의 검사 합격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第二十六條 制造, 更新改造, 購置, 進口的從事捕撈作業的船舶必須經漁業船舶檢驗部門檢驗合格后, 方可下水作業. 具體管理辦法由國務院規定).

2.4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검험조례

어업선박검험조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중요한 목적들이 그 제정 배경이다. 먼저, 선박검사제도의 법정 도입을 통한 수검율 향상 및 선박안전을 도모하고, 둘째로는 선박검사원 양성을 통한 기술서비스 및 윤리의식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각 법률 집행 주체의 관리 감독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 목적 (제1조) 법제정 목적은 체계적인 선박검사 체제 도입을 통한 선박의 감항성 확보 및 선원의 인명 및 재산보호에 있다.

† 검사 대상 선박(제2조) 중국 국적으로 등록된 어선을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업보조선박은 제외한다.

- 여기서 어선이란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하며, 어선, 양식선, 수산물 운송 판매선, 냉장가공선, 어업지도선, 어항공사선 등을 말한다.
 - 어업보조선은 농업부 “어업선박법정검험규칙”에 의거 어업 생산, 과학연구, 실습, 감독, 냉장물 운송선, 수산물 가공, 어항공사선, 예인선, 양식선 등을 말한다.
 - 어업보조선중 국내에서 종사하는 어선은 동 법의 적용대상이며,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어선은 중국 교통부 해사국 규정인 “선박과해상시설검험조례” 제30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 주관청 (제3조) 어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무원 어업행정 주관 부문에서 관장하며 이는 중국 농업부를 지칭한다.
- 법에서 정한 국가 어선검사국은 중국 어업선박검험국을 말하며, 지방 어선검사국은 어업선박검험국에서 검사대행권을 준 각 지방의 어업선박검험국을 말한다. 동 기관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 그리고 검사업무시 발생하는 행정지원 사항 및 검사 업무로 인한 폭력저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동 업무 수행시 관련 국가 정부 기관 (공안 등)의 검사업무 지원의무를 이 법에 명시하였다.
- † 검사 종류 (제4조) 어선의 검사 종류에는 최초검사(Initial), 운영검사(Operational), 임시검사(Interim)등 총 세 가지 검사로 분류된다.
- † 최초검사(초차검사, 제6조~제12조) 최초검사는 어선이 최초로 운항하기전 어선 검사국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검사를 말한다(이는 우리의 제조검사 또는 최초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 이해된다).
- 최초검사는 다음의 3가지 경우에 수행한다.
 - 1) 어선 건조시
 - 2) 어선 개조시
 - 총톤수, 만재흡수선, 주기관 출력, 승선인원, 항행구역 변경 등
 - 어선의 용도변경도 이에 해당됨
 - 3) 어선 수입시
 - 선박소유자는 선박 건조시 최초검사시 건조도면 및 관련 계산서를 어선검사국에 도면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며, 처리기한은 20일(공휴일 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 도면심사가 합격한 후에 어선소유자는 선박건조를 위한 최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 완료일 후 5일 이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다.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최초 검사시 도면심사 규정 및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선박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설비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부품 및 재료 등은 어선 검사국으로부터 형식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또한 최초검사를 위한 접수서류는 “어업선망공구지표허가서”가 있다.
 - “어업선망공구지표허가서”는 중국 농업부령인 “어업포로허가관리규정”에 의거 발행하는 서류로서 어선의 그물 등의 어로장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각 어업허가별 적정

포획량을 규정한 허가서이다.

- 이를 발급받아야 하는 어선으로는 원양어선, 대형저인망어선의 대형어선과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정한 어선 등이 있다.
- 동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8개월이다.
- 어선 수입시에는 먼저 관련 설계도서등이 어선검사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중고어선의 상태평가를 위한 어선기술평가증서도 수입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수입된 어선이 선령 15년 이상된 어선일 경우에는 국가상무부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된다.
- 그리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 및 원양어선 등은 어업선박검험국에서 직접 실시하고 그 외의 어선에 대하여는 각 지방 어선검사국에서 실시한다.
- 최초검사시 수입어선 및 원양어선을 제외하고는 지방 어선검사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통상 어선 선적항에 있는 어선 검사국에서 검사를 수검 받게 되는데, 어로작업 또는 기타사정 등으로 다른 지역에 선박이 위치하였을 경우 당해 지역의 어선 검사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수입어선과 원양어선의 검사관할권은 국가 어선검사국인 어업선박검험국에서 실시하게 된다.

† 운영검사 (제13조~제18조) 운영검사는 어선의 운항중에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내에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말한다(이는 우리나라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무선검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를 말한다).

- 운영검사는 93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 의정서와 같이 선박구조에 관하여는 매 4년마다 한번, 선박 설비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한번,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매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증서 유효기간 전후 3개월 사이에 운영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운영검사는 선박 주요 구성요소인 선체, 기관 및 전기설비등의 상태를 검사하며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설비등의 탑재 및 작동상태 등을 검사한다.
- 어선검사국은 검사 대상 선박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이후 5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하고, 검사완료후 5일이내에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증서발급기한이 15일까지 연장된다.
- 만약,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원양어선의 운영검사는 어선선박검험국 본부에서 직접실시하고 원양어선외의 운영검사는 지방 각 어선검사국에서 실시한다. 이때 최초검사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검사중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994년 농업부에서 정한 “어선건조공장허가법”에 의거 국가에서 정한 품질조건에 적합한 조선소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 또한, 선체, 보일러 및 기타 압력용기 및 그 부속품, 주기관 및 보조기관, 전기설비, 구명설비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무선설비, 방화설비, 화재안전설비 및 장치, 구명설비 및 배관, 선박용항해설비, 해상간행물

및 기타 설비 등의 배치, 재료 및 치수, 한편 수리시 사용하는 설비, 재료 및 부품 등은 어선 검사국에 의해 검사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 임시검사 (제19조~제22조) 임시검사는 운항중에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비정기적인 검사를 말하는데, 임시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 1)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내에 선적항으로의 회항이 불가능한 경우
- 2) 해상교통 및 해양오염방지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설비등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 3) 농업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 농업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선박 소유자, 선적항 변경
- 2) 해난사고 발생시
- 3) 어선항행구역, 어업구역 및 어업작업 방법 변경시
- 4)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의 수리 또는 교체시 (주기관의 교체 및 출력 변경도 포함)
- 5) 선박검사증서 연장 유효기간 만료시
- 6) 지정검사항목 유효기간 만료시 등
 - 임시검사는 어업인의 작업편의를 위해 검사유효기간전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검사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어선검사국은 수검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선박이 도착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에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임시검사 집행 관할권에 대한 사항은 정기검사에 대한 사항과 동일하다.

† 어선 검사등의 관리 감독 (제23조~제31조) 어업선박검협조례에는 어선 검사국 및 어선 검사원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먼저 어선검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은 검사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 1) 설계도면 및 관련 계산서가 시험 및 승인되지 않거나 어선 검사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2) 제조, 개조 및 수리시 선박설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및 관련 주요 설비 및 장치가 국가 품질규정에 의한 기술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국가에서 정한 폐선기준에 해당하는 선박

- 여기서 국가에서 정한 폐선기준은 2002년 제정된 “어업선박폐선규정”이 있다. 이는 어선의 재질별로 운항가능연수를 정하여 이를 넘긴 어선에 경우에는 폐선 조치를 명한다.

- 강선재질인 어선의 경우 길이 24미터미만 어선은 16년, 24미터~45미터미만의 경우 20년, 45미터~60미터 미만의 경우 26년, 60미터 이상의 어선의 경우 30년이상 운항하지 못한다.

- 목선재질인 어선의 경우 길이 12미터 미만 어선은 13년, 12미터~24미터미만의 경우 18년이다.
-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선의 경우 어선 길이에 관계없이 3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또한, 내수면에서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동운항가능 연수에 5년을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재료 및 유형등에 대하여는 각 성의 어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정기검사등의 검사시 선박검사원이 선체의 상태등이 현저하게 불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운항가능 연수에 상관없이 폐선조치를 할 수 있다
- 선박소유자 및 운항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검사증서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상기 규정에 의하여 어선이 폐선 되었을 경우
 - 2) 국적변경시
 - 3) 어선에서 비어선으로 변경할 경우
 - 4) 침몰등의 이유로 선박이 멸실되었을 경우
- 다음은 어선 검사국의 권한 및 의무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 어업선박검험국 본부에서는 각 지방 어선 검사국의 사업범위 등에 대하여 승인하고, 각 지방 어선검사국은 승인된 범위내에서 선박검사 등을 수행한다. 검사 관련 서류 및 인장 등은 어업선박검험국의 규정에 의해 통일된 서식을 쓰게 되어 있다.
- 선박검사수수료는 국무원 가격주관부문 및

재정부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어선검사원은 어선증서발급을 위한 선박안전 평가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검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동 업무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 선박은 어선 검사국의 조사 및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 검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어업선박검험국에서 정한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자만이 선박검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어선 검사국 및 검사원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동 책임과 관련 하여는 다음 장의 법률 책임에서 다루기로 한다.

† 법률 책임 (제32조~제38조) 동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아래의 경우와 같이 벌금이 부과된다.

- 행정처벌에 추가하여 관련기관 및 직무관련자가 기타의 이익수수 및 불법 사실의 조사, 처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 불이행, 직무소홀 및 직권남용 및 개인적 이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이것이 범죄의 구성요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책임자 및 사건 당사자는 관련법에 의한 형사 수사 및 처벌도 받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범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징계 등을 부가해야 한다고 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위반 내용	벌금 및 조치	조문
○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검사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	선박 몰수	제32조 제1항
○ 해체를 명받은 어선이 운항하는 경우	강제철거 및 2천~5만위안 형사처벌 추가	제32조 제2항
○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기시 정기검사 및 임시 검사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정지 및 1천~1만위안	제33조
○ 고의로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중요설비 및 부품등을 사용한 경우 ○ 고의로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중요한 설비 및 부품을 임의로 설치제거 하였을 경우 ○ 고의로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강제 철거 및 2천위안~2만위안 형사처벌 추가	제34조
○ 검사원이 규정된 검사 절차등을 준수하지 않고 증서를 발급한 경우	검사자격중지 및 1천~5천위안	제35조
○ 어선 검사국 및 검사원의 직무소홀, 직권남용, 불법행위, 뇌물수수 등	사무소 승인 취소 및 자격 박탈 등 형사처벌 추가	제36조 ~ 제38조

2.5 어선검사 관련 주요 기술법규

이번에는 어선검사 관련 주요 기술법규의 목록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선검사의 모범은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이며, 동법 아래 중화인민공화국어업선박검험조례가 있다.

부문규정에 중화인민공화국어업선박감독검험관리규정 및 어업선박보폐잡행규정(폐선처리규정)이 있으며, 어선검사 관련 주요 기술법규는 다음과 같이 총 7개로 규정되어 있다.

- ◆ 강질해양어선건조규범(어선의 강선구조기준 / 1998년 제정)
 - 강선으로 된 선장 12m 이상 90m 미만 어선에 적용
- ◆ 어업선박법정검험규칙 (2000년 제정)
 - 선장 12미터 이상 어선에 적용
- ◆ 어업선박법정검험규칙 (내수면, FRP, 목선, 강철어선에 대한 어업선박법정검험기술규칙 / 2000년 제정)
 - 선장 30m미만 하천 어업선박, 35미터미만 FRP선박, 30미터 미만 목선, 12미터 미만 강선 규칙임
- ◆ 어업선박법정검험규칙 (디젤엔진기관 및 파이프의 방화조치,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질소산화물 배출에 관한 규칙 / 2003년 제정)
- ◆ 해양어업선박법정검험규정 (2003년 제정)
- ◆ 어업선박선용산품검험규정 (2003년 제정)
- ◆ 어업선박설계도상급기술문건심사규정 (설계도서 심사규정 / 2003년 제정)

2.5.1 강질해양어선건조규범

☞ 구성

- 총칙 및 총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으로만 약 300면에 이르는 상세한 강선구조기준을 다루고 있다.
- 주요목차는 제1장 선체, 제2장 기관 및 어로설비, 제3장 전기설비, 제4장 냉동설비, 제5장 소방설비, 제6장 용접, 제7장 재료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 적용대상

-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강선으로 된 길이 12m 이상 90m 미만 어선에 적용한다.

2.5.2 어업선박법정검험규칙

☞ 구성

-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으로만 약 700면에 이르는 상세한 어선의 검사증서 발급, 총톤수 측정등을 다루고 있음
- 주요목차는 제1장 총칙, 제2장 검사증서발급, 제3장 총톤수측정, 제4장 만재흡수선, 제5장 해양오염방지설비, 제6장 국제항행어선 설비규정, 제7장 국내항행어선 설비규정, 제8장 선박기자재 검사규정

☞ 적용대상

- 선장 12미터 이상 어선에 적용

2.5.3 어업선박법정검험규칙 (내수면, FRP, 목선, 강철어선에 대한 어업선박법정검험기술규칙)

☞ 구성

-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으로만 약 600면에 이르는 상세한 어선의 검사증

서 발급, 총톤수 측정등을 다루고 있음

- 주요목차는 제1장 총칙, 제2장 내수면, 하천 운항 선박, 제3장 FRP 구조설비기준, 제4장 목선구조설비기준, 제5장 소형강선의구조설비기준, 제6장 최대탑재인원산정 규정

☞ 적용대상

- 길이 30m미만 내수면, 하천운항 어업선박, 35미터미만 FRP선박, 30미터 미만 목선, 12미터 미만 강선에 적용하는 규정임

2.5.4 어업선박법정검험규칙 (디젤엔진기관 및 파이프의 방화조치,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질소산화물 배출에 관한 규칙)

☞ 구성

- 총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목차로는 제1장 디젤엔진의 방화조치, 제2장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 적용대상

- 제1장 : 국제항해 어선 총톤수 500톤이상, 엔진 375kW 이상 선박
- 제2장 : 국제항해 어선 총톤수 400톤이상, 400
- 제3장 : 130kW 이상의 엔진을 탑재한 국제항해 어선에 탑재한 선박

2.5.5 해양어업선박법정검험규정

☞ 구성

- 총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으로만 약 500장에 이르는 상세한 선박검사 및 설비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주요목차는 제1장 총칙, 제2장 최초검사,

제3장 운영검사, 제4장 임시검사, 제5장 선박복원성등 검사, 제6장 선박만재흡수선, 제7장 안전설비검사, 제8장 무선설비검사, 제9장 해양오염설비검사, 제10장 냉장설비검사, 제11장 크레인등 검사, 제12장 총톤수측정, 부록 : 증명서 서식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

- 중국국적의 선박중 해양(바다)에서 운항하는 어선. 내수면 및 하천을 운항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을 참조할 수 있음

2.5.6 어업선박선용산품검험규정(2003년 제정)

☞ 구성

-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용 물건 등의 도면검사 및 제품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

- 어선에 설치되는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관련 설비 및 부품

2.5.7 어업선박설계도상급기술문건심사규정(설계도서 심사규정, 2003년 제정)

☞ 구성

-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선 설계도서 심사에 대한 절차 및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

- 건조, 개조를 위해 선박검사를 신청한 선박

2.6 지방성 법규 및 지방정부규칙

어업선박검험국에서 검사권을 위임한 지방 어선 검사국의 권한 및 의무사항은 다음의 지방성 법규 및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지방성법규]

- ◆ 요녕성어업선박감독검침조례_2000년
- ◆ 하북성어업선박관리조례_2003년
- ◆ 강소성어업관리조례_2002년
- ◆ 절강성어항어업선박관리조례_2002년
- ◆ 광서장족자치구어항어업선박관리조례_2001년

[지방정부규정]

- ◆ 산둥성연해수역어선어항안전감독관리판법_2001년
- ◆ 호북성어선어항감독관리판법_1998년

2.7 기타 어선검사 관련 법규

상기 어선검사 관련 주요 법규 외에 아래와 같은 관련법규들이 있다.

[관련 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_2002년 발효
- ◆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_1984년 발효
- ◆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_2000년
-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_2000년
- ◆ 중화인민공화국환경소음방지법_1997년
-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_1989년
- ◆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_2004년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_1996년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_1999년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_1990년
-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_1995년
-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_1989년
- ◆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_2000년

[행정법규]

- ◆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및 해상시설 검사 조례_1993년
- ◆ 중화인민공화국 어항 수역 교통 안전관리 조례_1989년
- ◆ 중화인민공화국 선박등기 조례_1995년
- ◆ 중화인민공화국 오염관리선박 방지에 관한 조례_1983년
- ◆ 중화인민공화국 하천 및 내수면 교통안전관리 조례

[부문규정]

- ◆ 중화인민공화국 어선등기 방법_1996년
- ◆ 중화인민공화국 어선행정집행관리 방법_2000년
- ◆ 어획물 채취 허가 관리 규정_2002년
-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항행감독 행정처벌규정_2000년
- ◆ 어선 선명 규정_1998년
- ◆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 외국인, 외국선박 어업활동관리 임시규정
- ◆ 원양어업관리 임시규정_1999년
- ◆ 어선 당직에 관한 규정_2000년 (시범적용)

- ◆ 어업 무전기 관리 규정_1996년
- ◆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어업선박 선원 시험 및 증명관련 규칙_1995년
- ◆ 하천, 내수면 어업선박 선원 시험 및 증명관련 규칙_1994년

3. 결 언

중국은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수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가하는 어선안전의 통제를 위해 2003년 관련 검사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선박관련 기술 기준을 포괄적으로 다룬 7개의 기술 기준도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는 일정 자격이 있는 지방 선박검사국에 검사권을 위임하여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화 및 법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조어선 및 어로행위는 계속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 부족 등으로 통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주변의 어업선진국의 안전모델을 바탕으로 한 어선검사제도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검험조례
- 包盛清외4인, 2004, 어선선박검험조례해설, 중국법제출판사
- 김정봉, 1996, 중국수산업의조사연구, 농촌경제연구원

이 논문은 선박검사기술협회 자체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힙니다.